

졸업(생) 사정 위원회 규정

하중초등학교

제 1 조 【목적】

졸업생 사정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함으로써 졸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신속하고,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의의가 있다.

제 2 조 【방침】 추가 개정

1. 본 규정은 졸업생 수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 시행한다.
2. 본교는 학교장상 및 대외상은 수여하지 않는다.

제 3 조 【졸업(생) 사정 위원회의 조직】

졸업생 사정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장 : 교감
2. 부위원장 : 교무부장
3. 위원 : 6학년 담임

제 4 조 【졸업(생) 사정 위원회의 심의, 의결 사항】

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졸업생의 자격 심의, 확정
2. 장학금 수여에 관한 사항
3. 기타 졸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
4.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

제 5 조 【장학금 수여】

선의를 장학금 수여자가 있을 경우에 졸업(생) 사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.

1. 장학금 수혜 대상자 / 순위 확인

가. 기초수급자

나. 한부모가정

다. 차상위계층

라. 위 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 중에서 담임교사가 추천한 아동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혜자 명부를 작성한다.

2.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 방법

각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졸업(생) 사정 위원회에서 (제 4조 1항)의 순서에 의거하여 장학금 수혜자 명부를 작성하여 지급한다.

제 6 조 【기타】

1. 위의 각 항 외의 포상은 필요에 따라 졸업생 사정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.
2. 각종 포상 대상자 중에서 현저한 도덕적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졸업(생) 사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한다.

제 7 조 【졸업(생) 사정 위원회 회의 시기】

1. 정기회의 : 상반기, 하반기 각 1회 이상
2. 임시회의 :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

부 칙

- ①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 일부 추가 개정하여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졸업(생) 사정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